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